

보수 규정

제정 2013. 04. 17. 규정 제 8호
개정 2013. 10. 30. 규정 제12호
개정 2014. 12. 19. 규정 제26호
개정 2015. 09. 30. 규정 제37호
개정 2015. 12. 31. 규정 제41호
개정 2016. 01. 25. 규정 제48호
개정 2016. 08. 17. 규정 제60호
개정 2016. 12. 30. 규정 제70호
개정 2017. 08. 25. 규정 제81호
개정 2018. 09. 19. 규정 제100호
개정 2019. 03. 15. 규정 제116호
개정 2019. 08. 14. 규정 제120호
개정 2019. 12. 20. 규정 제124호
개정 2020. 02. 05. 규정 제129호
개정 2020. 06. 24. 규정 제137호
개정 2020. 09. 17. 규정 제140호
개정 2020. 12. 17. 규정 제142호
개정 2021. 03. 25. 규정 제146호
개정 2021. 07. 28. 규정 제150호
개정 2021. 11. 16. 규정 제154호
개정 2022. 01. 27. 규정 제159호
개정 2022. 12. 23. 규정 제168호
개정 2023. 10. 18. 규정 제185호
개정 2024. 03. 25. 규정 제191호
개정 2024. 10. 8. 규정 제19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철도그린환경(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원 및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관하여는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급”이라 함은 직군별, 직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제수당”이라 함은 이 규정 제14조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4.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과 상여수당, 급식보조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상여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30, 2017. 08. 25)
5. “평균임금”이라 함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급, 월 제수당, 급식보조비 등과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의 12분의 3 해당액을 합하여 3등분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6. 08. 17.)
6. “부가연봉”은 급식보조비를 말한다.
 ※ 급식보조비(월 100,000원) (개정 2016. 08. 17.)

제2장 보수의 계산과 지급방법

제4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조(산정기준)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월급으로 한다. 다만, 보수의 성질상 일할액 또는 시간당액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액은 기본급 및 제수당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시간급은 기본급 및 제수당을 209(역사야간반은 183)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6조(계산기간) 보수의 계산기간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결근, 휴직, 퇴직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산할 기본급과 제수당은 익월 급여에서 정산한다.

제7조(신분변경시의 보수)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의 보수계산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신규채용자의 보수는 출근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2. 결근, 지각, 조퇴, 외출 및 근무지 이탈 등으로 소정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그 일수와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승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의 경우, 발령 당월의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4. 퇴직자는 당월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5. 사망 또는 산업재해로 인한 퇴직 시, 당월 보수를 전액 지급한다.

제8조(휴직 및 업무상재해자의 보수) 휴직 및 업무상재해 기간 중의 직원에 대한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 보상법에 따른다.(개정 2018.09.19)
2.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을 하거나 국제 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된 경우에는 기본급을 지급한다. 단, 해당기관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 무보수로 한다.
3. 제1호, 제2호 이외의 휴직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직위해제자의 보수) ①직원의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기본급만 지급한다.(개정 2015.12.31., 2022.01.27.)

②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직원이 상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어 재징계 처분 없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중에 미지급한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0조(징계자의 보수) 인사규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처분기간중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감봉의 경우에는 1회의 감봉액은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감봉총액은 보수월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0.06.24)
2. 정직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결근자 등의 보수) 결근자, 생리휴가자 및 병가자에 대하여는 그 일수에 대한 기본급과 월 제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상 병가자에 대하여는 산업재해 보상법에 따른다.(개정 2018.09.19)

제12조(비상시의 지급) 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임금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임금 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기본급

제13조(기본급) ①직원의 기본급은 별표 1과 같다.

②수습기간 중의 직원에 대한 보수는 기본급 전액을 지급 한다.

제4장 제수당

제14조(수당의 종류) ①회사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 및 대상은 별표 2~12와 같다.(개정 2019.12.20., 2021.07.28)

②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여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직원에게 퇴직일 또는 1~6월 입사자는 매년 6월 말일 기준으로 7월 지급, 7~12월 입사자는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1월 지급한다.

③취업규칙상의 휴일 및 휴가자와 업무상 부상질병 및 산전 산후 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연차계산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8.09.19)

제5장 퇴직금

제15조(퇴직금 지급대상) 회사는 임원 및 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16조(지급기준) ①제15조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계속 근무기간 1년마다 1개월분의 보수액을 지급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1개월분의 보수액은 퇴직 당시의 평균 임금으로 한다.

③계속근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년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월할, 일할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계속근무기간 계산에 있어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다만, 인사 규정 제30조 제4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16. 08. 17.)

제16조의2(퇴직금의 지급제한) ①임원 및 직원이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된 경우

에는 그 퇴직금은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합한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최저기준액 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최저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 신설 2021.03.25.)

제16조의3(해임 등에 따른 퇴직금의 제한) ①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한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관계 법령 및 정관 등에 따라 해임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감액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금의 1/2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22.12.23.)

제6장 보칙

제17조(단수처리) 보수 계산시의 단수처리는 10원 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 미만은 절상한다.

제18조(일할계산) 보수의 일할계산은 월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제19조(급여자료제출 및 정산) ①급여담당부서장은 전 직원의 근태현황에 따라 보수를 정산 처리한다.

②급여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한 자는 매월 1일 ~ 14일까지 급여담당부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수의 일할계산은 월액을 그 달의 월 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제20조(기간제직원의 급여지급) 기간제직원의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따른 보수는 익월 지급한다.

제21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0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5호와 6호 및 별표1, 별표7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4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별표 9의 신설규정은 2017년 1회에 한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법의 적용 시기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규정(제9조 제1항)은 2021.12.24.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해임 등에 따른 퇴직금의 제한 적용례) 제16조의3(해임 등에 따른 퇴직금의 제한)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5], [별표 7], [별표 8], [별표 10], [별표 11], [별표 12]의 경우,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개정 2015.09.30, 2015.12.31, 2016.01.25, 2016.08.17, 2016.12.30, 2017.08.25, 2018.09.19., 2019.03.15., 2019.08.14., 2019.12.20., 2020.09.17., 2020.12.17., 2021.07.28., 2021.11.16., 2022.12.23., 2023.10.18., 2024.10. 8.)

기 본 급 표

[단위 : 원]

사무직		공무직		
직 급	기본급	직 급	구 분	기본급
1급	<u>5,029,050</u>	단일 직급	청사환경팀, 차량환경팀, 역사환경팀	<u>2,129,350</u>
2급	<u>4,494,790</u>			
3급	<u>3,964,810</u>		역사 야간반, 전문청소PSD팀 (야간통상근무자에 한함)	<u>1,854,880</u>
4급	<u>3,429,880</u>			
5급	<u>2,754,690</u>			

상기 별표는 2024. 1. 1부터 시행한다.”

[별표 2](삭제, 2020. 02. .)

[별표 3] (삭제 2015. 12. 31.)

[별표 4]

초과근무 . 연차휴가수당

수당명		지급률 및 지급액	비 고
1. 초과 근무 수당	시간외	통상임금 × 1.5/209 × 시간 【역사 야간반】 통상임금 × 1.5/183 × 시간	※ 취업규칙 또는 사장의 명을 받아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휴일 또는 야간(22:00~06:00)에 근무 한 직원에게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초과근무수당 계산 시 시간 산정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야간	통상임금 × 0.5/209 × 시간 【역사 야간반】 통상임금 × 0.5/183 × 시간	
	휴일	통상임금 × 1.5/209 × 시간 【역사 야간반】 통상임금 × 1.5/183 × 시간	
2. 연차휴가수당		통상임금 × 1/209 × 8시간 × 미사용 일수 【역사 야간반】 통상임금 × 1/183 × 7.2시간 × 미사용 일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직원에게 지급한다.

※ 기타 제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

[별표 5] (개정 2024. 03. 25., 2024. 10. 8.)

경정비수당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차량환경사업소 일상반	100,000/월	경정비 청소 근무자에 한함.

[별표 6]

야간근무자 건강관리수당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야간근무자 (역사 야간근무)	70,000	연 1회 연차휴가수당지급 시, 지급

[별표 7] (신설 2015. 12. 31, 개정 2016. 08. 17., 2024. 10. 8.)

상여수당

[단위 : 원]

금액	비고
기본급의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설, 추석 명절상여로 각 100,000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12등분하여 매월 일정 상여로 지급명절상여는 지급일 현재 재직자(기간제 포함)에 한하여 지급하되 정직, 직위해제(대기발령자 제외)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정 상여는 해당 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직의 경우,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및 병가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명절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90일 이내인 경우 명절상여 50%를 지급- 계약직(기간제)의 경우, 지급일 현재 근무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명절상여 전액을 지급하고, 90일 이내인 경우 50%를 지급

상기 별표는 2024. 10. 8. 부터 시행하되, 2017. 1. 19부터 적용한다.

[별표 8] (신설 2016. 08. 17, 개정 2019. 03. 15., 2024. 10. 8.)

위험수당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고
고소전문환경팀, PSD전문환경사업소	100,000/월	고소부위 및 PSD 청소 근무자에 한함.

[별표9] (삭제 2018.09.19)

[별표10] (신설 2018.09.19., 개정 2024. 03. 25., 2024. 10. 8.)

보전수당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소장	50,000/월

[별표 11] (신설 2019. 12. 20., 개정 2024. 10. 8.)

사무능력수당

[단위 : 원, 지급주기 : 월]

직급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급	-	45,000	90,000	135,000	180,000
2급	-	40,000	80,000	120,000	160,000
3급	-	36,000	72,000	108,000	144,000
4급	-	29,000	58,000	87,000	116,000
5급	-	25,000	50,000	75,000	100,000

- ※ 사무직 및 특수직에 한함
- ※ 만근자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함
- ※ 2019. 1. 1.부터 시행

[별표 12] (신설 2021. 07. 28., 개정 2022. 12. 23., 2024. 10. 8.)

근속장려지원금

[단위 : 원, 지급주기 : 월]

근속연수	1~2년	3~4년	5~6년	7~8년 이상
전 직원	10,000	11,000	12,000	14,000

- ※ 전 직원 대상 지급
- ※ 만근자 기준 지급
- ※ 2022. 1. 1.부터 시행